

부산지방법원 2021. 1. 5 선고 2019가단3255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 고 1. B

2. C

3. D

4. 학교법인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김은정, 최청희

변 론 종 결 2020. 12. 8.

판 결 선 고 2021. 1.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2,049,816원, 피고 C는 3,878,920원, 피고 D는 3,903,467원, 피고 학교법인 E은 2,513,0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부산 동래구 F에서 G병원을, 피고 C는 부산 영도구 H에서 I병원을, 피고 D는 부산 동구 J에서 K병원을 각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학교법인 E은 부산 동래구 L에서 M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와 실손 의료비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피보험자(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라 함)들은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 함) 촬영을 받고, 피고들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MRI 진단비를 피고들 병원에 납부한 후, 이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실손 의료비로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MRI 진단비 상당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 고시(제 2010-75 호)에서 인정하는 MRI 세부산정기준에 의하면, MRI 급여 기준을 넓게 확장하고 있는데, ① 척추질환으로 척추골절 등, ② 관절질환으로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등을 전부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MRI 검사는 위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인정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병원은 MRI 검사에 따른 진단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들 병원에 MRI 진단비를 각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그 비용을 실손 의료비로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MRI 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의료인은 허가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임의로 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 병원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MRI를 촬영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고액의 진단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을 취득한 것이고, 더구나 피고들 병원과 이 사건 피보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들 병원은 MRI 진단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한 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 또는 부당이득한 금액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들 병원에 MRI 검사비로 지급한 금액에서 MRI 요양급여 환자부담금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별지1] 내지 [별지4] 부당이득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22,049,816원, 피고 C는 3,878,920원, 피고 D는 3,903,467원, 피고 학교법인 E은 2,513,035원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병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 사건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바, 이런 경우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참조).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금전채권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진료계약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 간에는 법률상계약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권은 사적자치와 자기책임원칙에서 유래하는 권리행사의 자유, 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제한하여 타인의 권리를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다수의 피보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경우 그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피보험자들 1인당 지급된 보험금은 최대 22,049,816원, 최소 2,513,035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지도 아니한다.

④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MRI 검사를 받음에 있어 그 검사가 임의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인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지 않을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원고 또한 임의비급여 관련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위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⑤ 원고는 어떠한 사고 또는 질병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관계는 원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 사이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3자인 피고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위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중호

[별지1]

보험료 지급표-G병원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U 일당액 (원)	환자부담금 (원)	MRU진당료 비율에 (%)	원액금액 (원)
			남성	S83	우측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10114	20110114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	우측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10931	20110401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	우측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10523	20110523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	우측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10801	20110802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10809	20110810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10812	20110812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10919	20110920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	우측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10204	20110205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	우측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11207	20111207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20125	20120209	2012	88,469	400,000	310,531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0319	20120319	2012	88,469	400,000	310,531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20323	20120324	2012	88,469	400,000	310,531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0326	20120326	2012	88,469	400,000	310,531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0401	20120401	2012	88,469	400,000	310,531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0619	20120619	2012	88,469	400,000	310,531
			남성	S83.7	우측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20725	20120726	2012	70,716	400,000	329,284
			남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0728	20120728	2012	70,716	400,000	329,284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0827	20120827	2012	70,716	400,000	329,284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20918	20120920	2012	70,716	400,000	329,284
			남성	S83.7	우측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21127	20121127	2012	70,716	400,000	329,284
			여성	S83.7	우측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30119	20130119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7	우측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30225	20130225	2013	101,289	420,000	318,711
			여성	S83	우측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30306	20130306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401	20130402	2013	101,289	420,000	318,711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402	20130403	2013	101,289	420,000	318,711
			여성	S83.2	왼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410	20130504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30416	20130416	2013	101,289	420,000	318,711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30430	20130430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30504	20130505	2013	101,289	420,000	318,711
여성	S83.5	우물의 (인)구)십자연대를 포함함	합계	20130618	20130619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53	우물자연대의 회집	총합	20130701	20130701	2013	101,289	420,000	318,711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30927	20130928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6	우물의 기타 및 상서물량 우물의 열화	총합	20131009	20131009	2013	101,289	420,000	318,711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31215	20131215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40219	20140226	2014	101,244	420,000	316,756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40225	20140225	2014	101,244	420,000	316,756
남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40308	20140308	2014	101,244	420,000	316,756
남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40308	20140308	2014	101,244	420,000	316,756
여성	S83.3	헌관 우물관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40421	20140422	2014	101,244	840,000	796,756
남성	S83.7	우물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합계	20140609	20140610	2014	101,244	420,000	316,756
여성	S83.43	내측구)연대의 회집	합계	20140730	20140731	2014	101,244	420,000	316,756
남성	S83.53	우물자연대의 회집	합계	20140829	20140830	2014	101,244	420,000	316,756
여성	S83.20	내측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41020	20141021	2014	101,244	420,000	316,756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50314	20150316	2015	101,046	420,000	314,954
남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50414	20150414	2015	101,046	420,000	314,95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50422	20150504	2015	101,046	420,000	314,954
남성	S83.7	우물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총합	20150425	20150425	2015	101,046	420,000	314,95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50722	20150722	2015	101,046	420,000	314,95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50729	20150805	2015	101,046	420,000	314,954
남성	S83.7	우물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합계	20150805	20150805	2015	101,046	420,000	314,954
남성	S83.7	우물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총합	20151026	20151026	2015	101,046	420,000	314,954
남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51109	20151109	2015	101,046	420,000	314,954
남성	S83.6	우물의 기타 및 상서물량 우물의 열화	총합	20160128	20160128	2016	106,546	420,000	313,45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60329	20160321	2016	106,546	420,000	313,45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60421	20160421	2016	106,546	420,000	313,454
남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60617	20160617	2016	106,546	420,000	313,454
남성	S83.21	외측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61112	20161114	2016	106,546	420,000	313,45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70313	20170314	2017	106,496	420,000	311,50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70419	20170421	2017	106,496	420,000	311,504
남성	S83.3	헌관 우물관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70426	20170427	2017	106,496	420,000	311,504
여성	S83	우물의 관통 및 연대의 할구, 열화	총합	20170524	20170524	2017	106,496	420,000	311,504
여성	S83.2	헌관 반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70822	20170904	2017	105,520	420,000	314,480
남성	S83.6	우물의 기타 및 상서물량 우물의 열화	합계	20171218	20180105	2017	105,520	420,000	314,480
여성	S83.29	반말안굴의 상서물량 회집	합계	20180312	20180327	2018	104,289	420,000	311,711
여성	S83.3	헌관 우물관말안굴의 회집	합계	20180406	20180407	2018	104,289	420,000	311,711
남성	S83.3	헌관 우물관말안굴의 회집	총합	20190426	20190426	2019	103,270	430,000	326,730

22,048,816

[별지2]

보험료 지급표-I병원

[illegible]

[별지3]

보험료 지급표-K병원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Z 발생년	통계부일 월-일	MRZ발생 년-월-일	연회금액 월-일
			남성	S83.52	전십자연대의 파열	통원	20110620	20110620	2011	91.948	420,000	928,052
			남성	S83.50	전십자연대의 열과 및 긴장	입원	20130117	20130131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찢김, 열과	통원	20131010	20131010	2013	101.289	420,000	318,71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찢김, 열과	통원	20140310	20140310	2014	103.244	420,000	316,756
			남성	S83.2	한쪽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40808	20140810	2014	103.244	420,000	316,756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403	20150405	2015	105.046	420,000	314,954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60711	20160720	2016	106.546	420,000	313,454
			남성	S83.51	후십자연대의 열과 및 긴장	입원	20160721	20160723	2016	106.546	420,000	313,454
			여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60727	20160729	2016	106.546	840,000	733,454
			남성	S83.43	내측측부연대의 파열	통원	20161027	20161027	2016	106.546	420,000	313,454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80119	20180119	2018	104.289	420,000	315,711

1,903,467

[별지4]

보험료 지급표-M병원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	환자부담금 (원)	MRI진단료,비 급여 (원)	총후급액 (원)
			남성	S83.6	우흉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경화	입원	20171201	20171204	2017	101,520	491,000	389,480
			남성	S83.6	우흉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경화	입원	20180326	20180516	2018	104,289	561,000	460,711
			여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80523	20180529	2018	104,289	520,000	415,711
			여성	S83.0	우흉벽의 찢김	입원	20180604	20180605	2018	104,289	520,000	415,711
			남성	S83.50	왼심지인대의 열화 및 긴장	입원	20180621	20180622	2018	104,289	520,000	415,711
			여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상관골의 찢김	입원	20180926	20180928	2018	104,289	520,000	415,711

2,511,095